

# 2017년 자체감사 결과보고

[ 영종동 · 연안동 주민센터 ]

인천광역시중구  
기획감사실

“역사문화 중심도시! 비상하는 관광중구!”

# 2017년 자체감사 결과보고

## I

### 감사실시 개요

- ❖ 기존 감사의 활동범위를 넓히려는 노력과 함께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업무 취약분야를 집중 수검대상으로 하여 예산집행의 올바른 회계질서 정립에 일조하고 사전·예방적 감사 지향을 통한 “원칙”과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도모

#### □ 감사 대상 및 기간 등

- 기 간 : 2017. 3. 6 ~ 2017. 4. 7 [10일간]
  - 영종동 - 2017. 3. 6 ~ 3. 10 [5일간], 연안동 - 2017. 4. 3 ~ 4. 7 [5일간]
- 대 상 : 영종동 주민센터, 연안동 주민센터
- 감사범위 : 2014. 5월 ~ 2017. 4월 (예산집행 등 행정업무 전반-종합감사)
  - 영종동 - 2014. 5월 ~ 2017. 2월, 연안동 - 2014. 9월 ~ 2017. 4월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 □ 감사 중점사항

-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회계업무 절차의 적정성 여부
  - 각종 회계업무 처리 및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 여부
- 민원 및 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 등 적정운영에 관련된 법령(지침) 준수 여부
  - 민원처리 기간 준수 및 업무처리의 적정 여부

- 사전예방 및 지도·점검에 중점 등

## II

## 감사결과

### 1. 총 평

- 금번, 영종동·연안동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는 「인천광역시 중구 자체감사규칙」에 의거, 2년 주기가 도래한 기관에 대하여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 특히, 잘못을 바로 잡도록 도와주는 시정(是正) 감사 및 행정의 낭비요인 부패행위에 대하여 사전차단 및 예방에 제한된 시간과 인력을 투입,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감사 목적을 극대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음.
- 수감기간 내 “국정농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3.10), 이에 따른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준비 등 어수선한 국정 상황 속에서도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는 최일선 행정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묵묵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오히려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하였으나,
- 수감한 감사결과, 예산·회계, 민원행정, 일반행정, 복지행정 등의 각 분야에서 36개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음.
- 각 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담당직원 업무연찬 실시가 필요하고

“시정”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관련규정에 따라 시정 조치.

- 또한, 각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실무 책임자 및 부서장의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

## 2. 처분내역 총괄

구 분 기 관 명	행정상 (건)				재정상 (천원 / 건)					신분상 (명/건)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추징	회수	부과	지급	
계	36	12	24	-	470 / 2	-	470 / 2	-	-	-
영 종 동	18	6	12	-	230 / 1	-	230 / 1	-	-	-
연 안 동	18	6	12	-	240 / 1	-	240 / 1	-	-	-

## 3. 지 적 사 항

### 지적사항 목록

연 번	분야별	제 목	소 관	처 분 내 역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1	예산회계	재무회계 규정 위반	영 종 동		주의	
2	"	약식지급명령 처리 규정 위반	영 종 동 연 안 동		주의	
3	"	통장 수당 지연 지급	영 종 동 연 안 동		주의	

연 번	분야별	제 목	소 관	처 분 내 역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원)	
4	"	부가가치세 미신고	공 연	중 안	내 야	주의	
5	"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개 소홀	공 연	중 안	내 야	주의	
6	"	지출결의서 사용 규정 위반	영	중	등	주의	
7	"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미준수	연	안	등	주의	
8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연	안	등	주의	
9	"	청백-e 개별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업무처리 소홀	공	중	등	시정	
10	"	출장여비 부당 지출	공 연	중 안	내 야	시정 주의	회수 (470,000) - 230,000 - 240,000
11	"	하자검사 업무 소홀	공 연	중 안	내 야	시정	
12	민원행정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관리 소홀	연	안	등	주의	
13	"	전입신고 사후확인 소홀	공 연	중 안	내 야	주의	
14	"	인감증명서 발급업무 소홀	공 연	중 안	내 야	주의	
15	일반행정	비밀취급인가자 관리 소홀	영	중	등	주의	
16	"	주민자치센터 수입·지출내역 공고 소홀	영	중	등	주의	

연 번	분야별	제 목	소 관	처 분 내 역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원)
17	일반행정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관리·운영 부적정	연 안 동		주의	
18	"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소홀 (프로그램, 봉사자, 시설 등)	영 종 동		시정	
19	"	수입증지 수납금 납입 지연	영 종 동		주의	
20	"	불용품 관리 소홀	연 안 동		주의	
21	"	민방위 자체 교육훈련 인정 대상자 관리 소홀	연 안 동		시정	
22	"	차량유지관리 부적정	영 종 동		시정	
23	복지행정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 관리 소홀	연 안 동		시정	
24	"	등록장애인 복지카드 관리 소홀	영 종 동		시정	

## ● 주요 지적사항

### 가 예산·회계 분야

#### 사례 1 재무회계 규정 위반

- 영종동 주민센터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동 재무관, 지출원, 업무담당자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제58조 제1항에 의거 지출결의서 작성하고 제130조 제1항에 의거 회계문서의 모든 날인을 규정되어 있음에도 총 3건(42,650천원)에 대해 지출결의서가 미작성(누락)되었음에도 예산을 지출한 사실이 있음.

『표』 재무회계 규정 위반 내역

집행일자	집행액	집행내역	비고
3건	42,650,000	-	-
2014-09-04	14,800,000	영종복합청사 게이트볼장 바람막이 공사(건축)	시설비
2014-09-04	19,850,000	영종복합청사 게이트볼장 바람막이 공사(전기)	시설비
2014-09-04	8,000,000	2014 하반기 통장 추석 상여금 지급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 ■ 영종동 주민센터에서는

- ☞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 해당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업무에 만전

(⇒ 행정상 주의)

## 사례 2 약식지급명령 처리 규정 위반

- 영종동·연안동 주민센터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제54조 제2항에 의거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지급명령 별지 제47호서식)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음에도 2014년 5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약식지급명령” 서식에 직인·사인을 날인하지 않았고, 담당자 날인도 누락되었음에도 금고에서 예산을 지출한 사실이 있음.

### ▣ 영종동·연안동 주민센터에서는

- ☞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 해당 규정을 숙지토록 하고, 회계업무 담당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지적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업무에 만전  
(⇒ 행정상 주의)

## 사례 3 통장 수당 지연 지급

- 영종동·연안동 주민센터에서는 「인천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 제14조 (실비변상)제1항에 의하면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아래표와 같이 통장들에게 2014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매월 지급하는 통장수당을 총 32회에 걸쳐 1일에서 최대 14일까지 지연하여 지급하는 등 통장수당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1』 영종동 주민센터, 통장 수당 지연 지급 내역

집행일자	집행액	집행내역	비고
19건	156,585,850	-	-
2014-05-27	8,000,000	2014년 5월 통장수당 지급	추** 외 39명
2014-06-27	8,000,000	2014년 6월 통장수당 지급	추** 외 39명
2014-09-22	8,000,000	2014년 9월 통장수당 지급	추** 외 39명
2014-11-21	8,200,000	2014년 11월 통장수당 지급	추** 외 40명
2014-12-22	8,135,450	2014년 12월 통장수당 지급	추** 외 40명
2015-01-26	7,948,380	2015년 1월 통장수당 지급	추** 외 40명
2015-05-26	8,400,000	2015년 5월 통장수당 지급	추** 외 41명
2015-07-21	8,396,480	2015년 7월 통장수당 지급	추** 외 41명
2105-09-04	8,400,000	2015년 8월 통장수당 지급	추** 외 41명
2016-03-23	8,400,000	2016년 3월 통장수당 지급	추** 외 41명
2016-04-22	8,200,000	2016년 4월 통장수당 지급	추** 외 40명
2016-05-31	8,073,300	2016년 5월 통장수당 지급	추** 외 39명
2016-06-30	8,400,000	2016년 6월 통장수당 지급	추** 외 41명
2016-07-21	8,400,000	2016년 7월 통장수당 지급	추** 외 41명
2016-08-25	8,245,160	2016년 8월 통장수당 지급	추** 외 41명
2016-09-21	8,600,000	2016년 9월 통장수당 지급	추** 외 42명
2016-10-21	8,212,900	2016년 10월 통장수당 지급	추** 외 41명
2016-11-21	8,200,000	2016년 11월 통장수당 지급	추** 외 40명
2017-01-25	8,374,180	2017년 1월분 통장수당 지급	추** 외 42명

『표2』 연안동 주민센터, 통장 수당 지연 지급 내역

집행일자	집행액	집행내역	비고
13건	15,200,000	-	-
2015-09-21	5,000,000	2015년 9월 통장수당 지급	2통장외 24명
2015-10-23	5,000,000	2015년 10월 통장수당 지급	2통장외 24명
2015-11-24	5,200,000	2015년 11월 통장수당 지급	1통장외 25명

2015-12-21	5,200,000	2015년 12월 통장수당 지급	1통장외 25명
2016-01-25	5,200,000	2016년 1월 통장수당 지급	1통장외 25명
2016-02-22	5,200,000	2016년 2월 통장수당 지급	1통장외 25명
2016-03-21	5,200,000	2016년 3월 통장수당 지급	1통장외 25명
2016-04-22	5,200,000	2016년 4월 통장수당 지급	1통장외 25명
2106-05-23	5,290,320	2016년 5월 통장수당 지급	1통장외 26명
2016-07-21	5,400,000	2016년 7월 통장수당 지급	1통장외 26명
2016-08-26	5,400,000	2016년 8월 통장수당 지급	1통장외 26명
2016-09-22	5,400,000	2016년 9월 통장수당 지급	1통장외 26명
2017-03-29	5,283,870	2017년 3월 통장수당 지급	1통장외 26명

▣ 영종동·연안동 주민센터에서는

☞ 통장업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담당자에 대해 관련된 법령을 정확히 숙지,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  
(⇒ 행정상 주의)

사례 4 부가가치세 미신고

- 영종동·연안동 주민센터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제140조 (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제1항에 의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나 영수증 여선전문금용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 있음.

- 또한 제2항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의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홈텍스사이트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의 신고를 통해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2014년 5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미신고한 사실이 있음.

▣ 영종동·연안동 주민센터에서는

- ☞ 회계업무 담당자는 관련된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  
(⇒ 행정상 주의)

사례 5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개 소홀

- 영종동·연안동 주민센터에서는 아래표와 같이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라 매월 1회 자치단체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함에도 총 5건에 대해 미공개한 사실이 있음.

『표1』 영종동 주민센터,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공개 현황

집행일자	집행액	집행내역	비고
2건	2,561,000	-	-
2014-09-24	1,300,000	경로당 노래반주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014-09-24	1,261,000	경로당 자동혈압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표2』 연안동 주민센터,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공개 현황

집행일자	집행액	집행내역	비고
3건	2,758,454	-	-
2016-11-10	1,158,454	관용차량 부품교체비	공공운영비
2016-12-19	1,000,000	연안동 경로당 도배작업비	시설비
2017-02-27	600,000	2017년 설명절 기념 직원 격려물품 구입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영종동·연안동 주민센터에서는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사용 절차규정을 관련 직원이 숙지하여 신용카드로 사용한 100만원이상 사용내역(업무추진비의 경우 50만원이상)에 대하여는 반드시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만전

(⇒ 행정상 주의)

사례 6 지출결의서 사용 규정 위반

- 영종동 주민센터에서는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제121조 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100만원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5호 서식)를 사용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구입과 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8호 서식)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었음에도 총 3건에 대해 구입과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

『표』 지출결의서 사용 규정 위반 내역

집행일자	집행액	집행내역	비고
3건	5,651,000	-	-
2014-09-24	1,300,000	경로당 노래반주기 구입	카드사용
2014-09-24	1,261,000	경로당 자동혈압계 구입	카드사용
2015-07-22	3,090,000	경로당 생활집기 구입	카드사용

▣ 영종동 주민센터에서는

- ☞ 회계업무 담당자는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해당 규정을 정확히 숙지,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  
(⇒ 행정상 주의)

사례 7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미준수

- 연안동 주민센터에서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제도는 물가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자영업자(식당)의 신용거래수수료 부담을 줄여 서민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도입 시행중인 제도로서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의하면 급식비는 현금영수증 카드 의무적 적용대상으로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현금영수증카드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또한,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 품의금액 범위 내에서 거래사업자에게 부서별 신용카드의 현금영수증 발급기능을 사용하여 지출증빙용(소득공제용이 아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받아 지체없이 회계담당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부”를 정리하여야 함에도 담당자는 매월 1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검색하여 재무관까지 보고(결재)를 득해야 함에도 득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연안동 주민센터에서는**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해당 규정을 숙지토록 하고, 회계업무 담당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지적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업무에 만전  
(⇒ 행정상 주의)

**사례 8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연안동 주민센터에서는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총 4건에 대하여 명절 선물은 본청에 한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표』 연안동 주민센터,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내역

집행일자	집행액	집행내역	비고
4건	1,788,600	-	-
2015-10-27	278,400	2015년 추석맞이 직원 격려물품 구입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16-03-28	525,000	2016년 설맞이 직원 격려물품 구입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16-10-10	385,200	2016년 추석맞이 직원 격려물품 구입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17-02-27	600,000	2017년 설명절 기념 직원 격물품 구입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연안동 주민센터에서는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해당 규정을 숙지토록 하고, 업무추진비 집행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회계업무 추진 담당자들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에 만전 (⇒ 행정상 주의)

사례 9 청백-e(개별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업무추진 소홀

○ 영종동 주민센터에서는 예산집행절차 준수 및 공무원의 회계책임 강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청백-e 개별상시모니터링시스템에 대하여 감사수범기간 중 점검결과 일정기간 내 동일업체결재내역, 동일채권자 계좌다수 등록 지출, 지급명령승인취소, 선금보증 미입력 등의 항목에서 총 98건의 감사자 추출 건에 대한 각 동 조치결과가 미제출 된 사실이 있음.

『표』 청백-e 개별상시모니터링 조치결과 미제출 현황

(단위 : 건)

년 / 월 / 일	모니터링 분야	상 세 항 목	감사자 추출건수	조치완료건수	제출완료건수
2014/05/01	지출분야	일정기간내동일업체결재내역	1	0	0
2014/06/01	지출분야	일정기간내동일업체결재내역	1	0	0
2014/07/01	지출분야	일정기간내동일업체결재내역	1	0	0
		지급명령승인취소	4	4	0
2014/08/01	지출분야	일정기간내동일업체결재내역	1	0	0
2014/09/01	지출분야	동일채권자계좌다수등록지출	1	0	0
2014/10/01	지출분야	동일채권자계좌다수등록지출	1	1	0
2014/11/01	지출분야	동일채권자계좌다수등록지출	1	0	0
2015/02/01	지출분야	동일채권자계좌다수등록지출	1	1	0
2015/03/01	지출분야	동일채권자계좌다수등록지출	1	0	0
		일정기간내동일업체결재내역	3	0	0
2015/05/01	지출분야	동일채권자계좌다수등록지출	1	0	0
		일정기간내동일업체결재내역	1	0	0
2015/06/01	지출분야	동일채권자계좌다수등록지출	1	0	0

(단위 : 건)

년 / 월 / 일	모니터링 분야	상 세 항 목	감사자 추출건수	조치완료건수	제출완료건수
2015/07/01	지출분야	동일채권자계좌다수등록지출	1	0	0
		일정기간내동일업체결제내역	1	0	0
		지급명령승인취소	10	0	0
2015/08/01	지출분야	동일채권자계좌다수등록지출	1	0	0
2015/09/01	지출분야	동일채권자계좌다수등록지출	1	0	0
2014/05/01	지출분야	일정기간내동일업체결제내역	1	0	0
2014/06/01	지출분야	일정기간내동일업체결제내역	1	0	0
2014/07/01	지출분야	일정기간내동일업체결제내역	1	0	0
		지급명령승인취소	4	4	0
2014/08/01	지출분야	일정기간내동일업체결제내역	1	0	0
2014/09/01	지출분야	동일채권자계좌다수등록지출	1	0	0
2014/10/01	지출분야	동일채권자계좌다수등록지출	1	1	0
2014/11/01	지출분야	동일채권자계좌다수등록지출	1	0	0
2015/02/01	지출분야	동일채권자계좌다수등록지출	1	1	0
2015/03/01	지출분야	동일채권자계좌다수등록지출	1	0	0
		일정기간내동일업체결제내역	3	0	0
2015/05/01	지출분야	동일채권자계좌다수등록지출	1	0	0
		일정기간내동일업체결제내역	1	0	0
2015/06/01	지출분야	동일채권자계좌다수등록지출	1	0	0
2015/07/01	지출분야	동일채권자계좌다수등록지출	1	0	0
		일정기간내동일업체결제내역	1	0	0
		지급명령승인취소	10	0	0
2015/08/01	지출분야	동일채권자계좌다수등록지출	1	0	0
2015/09/01	지출분야	동일채권자계좌다수등록지출	1	0	0
2015/10/01	지출분야	동일채권자계좌다수등록지출	1	1	0
		일정기간내동일업체결제내역	1	1	0
2015/11/01	지출분야	일정기간내동일업체결제내역	1	1	0
2015/12/01	지출분야	동일채권자계좌다수등록지출	1	0	0
		일정기간내동일업체결제내역	4	0	0
2016/01/01	지출분야	동일채권자계좌다수등록지출	1	1	0
2016/02/01	지출분야	동일채권자계좌다수등록지출	1	1	0
		일정기간내동일업체결제내역	1	1	0
2016/03/01	지출분야	동일채권자계좌다수등록지출	1	0	0
2016/04/01	지출분야	동일채권자계좌다수등록지출	1	0	0
		일정기간내동일업체결제내역	2	0	0
2016/05/01	지출분야	동일채권자계좌다수등록지출	1	0	0
		일정기간내동일업체결제내역	2	0	0
2016/06/01	지출분야	동일채권자계좌다수등록지출	1	0	0
		일정기간내동일업체결제내역	3	0	0
2016/07/01	지출분야	동일채권자계좌다수등록지출	1	0	0
2016/08/01	지출분야	동일채권자계좌다수등록지출	1	0	0
2016/09/01	지출분야	동일채권자계좌다수등록지출	5	0	0
		계약분야 선금보증 미입력	1	0	0
2016/10/01	지출분야	동일채권자계좌다수등록지출	5	0	0
		일정기간내동일업체결제내역	3	0	0
2016/11/01	지출분야	동일채권자계좌다수등록지출	5	0	0
		일정기간내동일업체결제내역	2	0	0
2016/12/01	지출분야	동일채권자계좌다수등록지출	5	0	0
		일정기간내동일업체결제내역	4	0	0
2017/01/01	지출분야	동일채권자계좌다수등록지출	3	0	0
2017/02/01	지출분야	동일채권자계좌다수등록지출	6	0	0
		일정기간내동일업체결제내역	2	0	0
<b>합 계</b>			<b>98</b>	<b>12</b>	<b>0</b>

▣ 영종동 주민센터에서는

- ☞ 미제출된 총 98건에 대하여는 원인규명을 통하여 즉시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기획감사실로 제출  
(⇒ 행정상 시정)

**사례 10**    **출장여비 부당 지출**

-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의하면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제1항에 의하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영종동·연안동 주민센터에서는 아래 “출장여비 부당 지출현황”에서와 같이 출장명령 시간에 전자결재 상의 전자업무를 수행,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지급(38건, 470,000원)한 의혹이 있음.

『표 1』 영종동 주민센터, 출장여비 부당 지출현황

(단위 : 원)

번호	소속	직급	성명	출장명령 시간		출장명령 시간 내 결재시간		지급 출장 여비
				출장일	출장시간	결재시간	결재문서명	
총 14건, 230,000원 지출								

(단위 : 원)

번호	소속	직급	성명	출장명령 시간		출장명령 시간 내 결재시간		지급 출장 여비
				출장일	출장시간	결재시간	결재문서명	
1	영중동 주민센터	** 7	최**	2014.08.01	14:00~18:00	15:07~17:05	2014년도 7월 통장 정례회의 참석수당 지급 외 8건	20,000
2	영중동 주민센터	** 7	채**	2014.08.08	14:00~18:00	15:55	환경미화원 하계휴가 처리	10,000
3	영중동 주민센터	** 7	최**	2014.08.14	14:00~18:00	15:41~17:33	2014년도 제23회 중구 구민의 날 기념 『모범주민』 추천 대상자 제출 외 7건	20,000
4	영중동 주민센터	** 7	최**	2014.11.18	14:00~18:00	14:42~16:12	호봉 재확정 신청 안내 외 19건	20,000
5	영중동 주민센터	** 7	최**	2014.11.21	13:00~17:00	15:03~16:04	2014년도 공직자 보안 및 국가안보 교육 실시 알림 외 8건	20,000
6	영중동 주민센터	** 6	황**	2015.05.01	16:40~17:40	16:56~16:57	2015년 1단계 공공일자리 나눔사업 자체점검 결과 제출 요청 외 7건	10,000
7	영중동 주민센터	** 7	정**	2015.05.01	10:50~15:00	11:18~11:29	서비스연계실적 통보 및 주보 제출 외 1건	20,000
8	영중동 주민센터	** 6	황**	2015.05.11	12:00~18:00	12:43~12:46	초과근무사전명령서(2015. 05. 11.) 외 12건	10,000
9	영중동 주민센터	** 7	신**	2015.08.05	10:00~14:00	10:18	북카페 도서 구입	20,000
10	영중동 주민센터	** 9	이**	2015.08.17	09:30~13:30	10:06	출장복명서	20,000
11	영중동 주민센터	** 7	윤**	2016.07.15	13:00~17:00	14:00~16:45	2016년도 상반기洞 청소행정 분야 평가자료 제출 외 11건	10,000
12	영중동 주민센터	** 7	윤**	2016.07.19	10:00~14:00	13:28~13:56	환경미화원 휴가신청서 제출 외 1건	10,000
13	영중동 주민센터	** 7	이**	2016.09.05	12:00~16:00	12:25~12:39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및 부 여대장 이증금고 보관 외 1건	20,000
14	영중동 주민센터	**7	윤**	2016.09.07	13:00~17:00	14:10~14:47	관용차량 유류구입(78고7193) 외 4건	20,000

『표 2』 연안동 주민센터, 출장여비 부당 지출현황

(단위 : 원)

번호	소속	직급	성명	출장명령 시간		출장명령 시간 내 결재시간		지급 출장 여비
				출장일	출장시간	결재시간	결재문서명	
총 24건, 240,000원 지출								

(단위 : 원)

번호	소속	직급	성명	출장명령 시간		출장명령 시간 내 결재시간		지급 출장 여비
				출장일	출장시간	결재시간	결재문서명	
1	연안동 주민센터	**7급	채**	2015.09.02	15:00~16:00	15:27	차량 배차 협조 요청	10,000
2	연안동 주민센터	**7급	채**	2015.09.03	15:00~16:00	15:20~15:41	2015년도 해외선진문화체험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외 5건	10,000
3	연안동 주민센터	**7급	이**	2015.09.03	13:00~15:00	14:19	쓰레기 불법투기 민원 신고 제출	10,000
4	연안동 주민센터	**6급	이**	2019.09.23	09:00~11:00	10:08~10:46	구민의 날 기념식 관련 주무팀장 회의 개최 외 22건	10,000
5	연안동 주민센터	**8급	김**	2015.10.01	11:00~12:00	11:18	보육료(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신청명단 제출	10,000
6	연안동 주민센터	**6급	이**	2015.10.05	14:00~15:00	14:21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신청 대상자 명단 제출	10,000
7	연안동 주민센터	**7급	채**	2015.10.06	15:00~16:00	15:32	2015년 9월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10,000
8	연안동 주민센터	**6급	이**	2015.10.28	14:00~15:00	14:16~14:23	정보공개 결정 및 통지 외 9건	10,000
9	연안동 주민센터	**7급	조**	2016.02.29	15:00~16:00	15:27~15:30	2016. 3월 區 확대간부회의 자료 제출 외 2건	10,000
10	연안동 주민센터	**7급	채**	2016.03.03	15:00~16:00	15:32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실적 제출(3차)	10,000
11	연안동 주민센터	**8급	김**	2016.03.08	16:00~17:00	16:21	당직명령 변경신청	10,000
12	연안동 주민센터	**7급	조**	2016.04.01	14:00~15:00	14:38	제20대 국회의원선거사무 매식비 지출 (국비재배정)	10,000
13	연안동 주민센터	**7급	채**	2016.04.06	14:00~15:00	14:20	선녀바위 자연발생유원지 지정 해제 알림	10,000
14	연안동 주민센터	**6급	이**	2016.08.04	14:00~15:00	14:23~14:24	디지털복합기 CC인증제품 목록 통보 외 2건	10,000
15	연안동 주민센터	**7급	하**	2016.08.09	15:00~16:00	15:15	폭염특보에 따른 사전 폭염대응 예방활동 철저	10,000
16	연안동 주민센터	**7급	채**	2016.08.30	15:00~16:00	15:17~15:39	2016년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홍보 요청 외 2건	10,000
17	연안동 주민센터	**7급	하**	2016.09.26	15:00~16:00	15:44	상담민원 (제목: 쓰레기)	10,000
18	연안동 주민센터	**6급	이**	2016.09.30	14:00~15:00	14:19~14:34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참석 대상자 명단 제출 외 1건	10,000

(단위 : 원)

번호	소속	직급	성명	출장명령 시간		출장명령 시간 내 결재시간		지급 출장 여비
				출장일	출장시간	결재시간	결재문서명	
19	연안동 주민센터	**6급	이**	2016.10.28	14:00~15:00	14:39~14:49	국적상실자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사항 협조 외 3건	10,000
20	연안동 주민센터	**8급	강**	2016.11.09	14:00~15:00	14:19	등록장애인 전출 통보	10,000
21	연안동 주민센터	**8급	강**	2016.11.14	14:00~15:00	14:35	저소득 주민 심장수술 대상자 추천 요청	10,000
22	연안동 주민센터	**8급	전**	2016.11.24	11:00~12:00	11:28	관내출장신청서 (2016. 11. 24.)	10,000
23	연안동 주민센터	**6급	이**	2016.11.24	14:00~15:00	14:26	2016년 11월 양육지원금 계속분 지급 대상자 거주확인서 제출	10,000
24	연안동 주민센터	**8급	강**	2016.11.24	14:00~15:00	14:31	2016년 11월 양육지원금 계속분 지급 대상자 거주확인서 제출	10,000

▣ 영종동·연안동 주민센터에서는

- ☞ 부적정하게 지급된 여비(총 470,000원 ⇒ 영종동 230,000원 / 연안동 240,000원)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 조치  
(⇒ 행정상 시정 / 재정상 회수)
- ☞ 직원들로 하여금 출장여비와 관련된 관계법령을 정확히 숙지, 업무연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  
(⇒ 행정상 주의)

**사례 11**    **하자검사 업무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함에도 아래표와 같이 시행한 총 42건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 1』 영종동 주민센터, 하자검사 미실시 현황

연 번	공 사 명	책 임 개시일	책 임 만료일	비 고
12건 (2014년 3건, 2015년 5건, 2016년 4건)				
1	****청사 게이트볼장 바람막이 공사	2014-08-29	2016-08-28	
2	****청사 게이트볼장 바람막이 공사(전기)	2014-08-29	2016-08-28	
3	무선방송망시스템 이전설치 공사	2014-11-12	2015-11-11	
4	****청사 편의시설 리모델링 공사	2015-05-31	2015-05-30	
5	관내 원격지역 마을게시판 설치 공사	2015-08-03	2015-08-02	
6	**동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샤워실 보수공사	2015-09-10	2016-09-09	
7	무선방송망 이전 설치 공사(*통, **통)	2015-11-26	2016-11-25	
8	영종동 *통 마을방송 유지보수 공사	2015-12-07	2016-12-06	
9	****청사 시설 개선 공사	2016-02-03	2018-02-02	
10	****청사 당직실 정비 공사	2016-01-25	2017-01-26	
11	**주민센터 지하창고 방습공사	2016-09-21	2019-09-20	
12	영종 **통 마을방송 신규 설치	2016-11-02	2017-11-01	

『표 2』 연안동 주민센터, 하자검사 미실시 현황

연 번	공 사 명	책 임 개시일	책 임 만료일	비 고
4건 (2015년 2건, 2016년 2건)				
1	*청사 외벽공사	2015-04-07	2016-04-06	2015 하반기
2	*청사 및 비가림막 공사	2015-04-18	2016-04-17	2015 하반기
3	*청사 방수공사	2015-08-25	2016-08-24	2016 하반기
4	*청사 입구 장애인이동로(장애인 램프) 보수공사	2016-02-23	2018-02-22	2016 하반기

## ▣ 영종동·연안동 주민센터에서는

- ☞ 미실시한 하자검사에 대하여는 기간도래 여부를 확인 후 검사를 즉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획감사실로 통보토록 조치하며, 아울러 공사감독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직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

(⇒ 행정상 시정)

## 나 민원행정 분야

### 사례 12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작성 소홀

- 「2013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자치부) P31,
  - 라. 번호부여대장 관리
    - (3) 번호부여대장은 반드시 생년월일·성별로 구분하여 작성·관리한다.
    - (5) 번호부여대장의 매장마다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고,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대장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연안동 주민센터에서는 아래 “주민등록번호 부여 현황”에서와 같이 총 57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데 있어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각 페이지번호가 미기재 되어 있고,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관리되지도 않은 사실이 있음.

『표』 주민등록번호 부여 현황

기 간	부여 회수	합 계
2015 9월 ~ 12월	13회	57회
2016 1월 ~ 12월	37회	
2017 1월 ~ 3월	7회	

■ 연안동 주민센터에서는

👉 비밀 관련업무 관계공무원들이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비밀 보안업무 제고에 도모하고자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및 직원 교육을 실시가 시급하고, 향후 동일한 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

(⇒ 행정상 주의)

사례 13 전입신고 사후 확인 소홀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에 의하면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에게 보내야 하고 통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동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동장은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 영종동·연안동 주민센터에서는 총 5(영종동-4, 연안동-1) 건에 대하여 전입신고 사후확인에 대한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1』 영종동 주민센터, 전입신고 확인서 관리 소홀 현황

번호	세대주명	신고일	제출일 (확인일)	전입최소 확인일(30일) 초과	거주여부 미확인	통 장 미확인	담당공무원 미확인
1	윤**	2016.07.29	x	-	○	-	○
2	고**	2016.07.29	x	-	○	-	○
3	이**	2016.08.10	x	-	○	-	○
4	구**	2016.08.16	x	-	○	-	○

『표 2』 연안동 주민센터, 전입신고 확인서 관리 소홀 현황

번호	세대주명	신고일	제출일 (확인일)	전입최소 확인일(30일) 초과	거주여부 미확인	통 장 미확인	담당공무원 미확인
1	장**	2015.11.30	2016.01.14	○	○	○	○

▣ 영종동·연안동 주민센터에서는

☞ 전입신고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

(⇒ 행정상 주의)

**사례 14**    **인감증명서 발급업무 소홀**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 제4항에 의하면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의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 영종동 주민센터에서는 아래 현황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감증명발급 신청자(본인)의 “서명 또는 무인”과 신청자(대리인)의 “무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4건이 있고,
- 연안동 주민센터에서는 인감증명발급 신청자(대리인)의 “무인”을 받지 않은 사실 3건이 있음.

『표』 인감증명서 발급 부적정 현황

(단위 : 건)

동 명	연 도	인감증명서 수령 확인 부적정			
		총 계	소 계	본인 미확인 (서명 또는 무인)	대리인 미확인 (무인)
영종동	2015	7	4	1	3
연안동	2015		-	1	
	2016		-	1	
	2017		-	1	

■ 영종동·연안동 주민센터에서는

☞ 인감증명 발급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들이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 교육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

(⇒ 행정상 주의)

**다****일반행정 분야****사례 15**    **비밀취급인가자 관리 소홀**

- 영종동 주민센터에서는 아래 현황표에서와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않은 업무담당자가 비밀문서(주민등록번호 조립부)를 다루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 非 비밀취급인가자 비밀문서 취급(업무) 현황**

직 급	성 명	담당업무	업무담당기간	비밀문서 취급사항
** 9급	윤**	- 통합민원 (가족관계, 주민등록 등)	2016.10.04. ~ 현재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사용·관리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증 필요

**▣ 영종동 주민센터에서는**

- ☞ 비밀 관련업무 관계공무원들이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비밀 보안업무 제고에 도모하고자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및 직원 교육을 실시가 시급하고, 향후 동일한 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

(⇒ 행정상 주의)

**사례 16 주민자치센터 수입·지출내역 공고 소홀**

-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사용료 등) 제5항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를 동장과 협의하여 봉사활동비 등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
- 영종동 주민센터에서는 아래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현황”에서와 같이 2014·2015년도 상반기, 2015년도 하반기에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 20일 이내에 공고하지 못했고, 2014년도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공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표』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 수입·지출내역 공고 현황

연 도	상 반 기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	하 반 기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
2014	○	× (07.21)	×	×
2015	○	× (7/21)	○	× (1/22)
2016	○	○	○	○

**▣ 영종동 주민센터에서는**

☞ 영종동 주민자치센터 원만한 운영과 투명한 예산·회계 질서 확립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수입 및 지출내역을 해당 조례가 지정한 기한 안에 일반 주민에게 공고·게시

(⇒ 행정상 주의)

## 사례 17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부적정

-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보고) 제1항 동장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 연안동 주민센터에서는 아래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  
에서와 같이 2016년 및 2017년도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9조(간사) 제2항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와 아울러 동 조례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2015년도 12회의 회의 개최 회의록이 미작성된 사실이 있으며,
- 동 조례 제17조(구성 등)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게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 연안동에서는 2016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사실 또한 있음.

『표 1』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

(2017. 3월말 현재)

(단위 : 건)

연 도	연간 운영계획 수립 여부		자치센터 사용료 등 수입·지출내역 공고 여부				회의록 작성 여부	
	수립 여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 여부	상 반 기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	하 반 기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	회의개최 건수	회의록 미작성 건수
2015	-	-	○	○	○	○	12	12
2016	×	×	○	○	○	○ (2017.02.13)	12	-
2017	×	×	-	-	-	-	3	-

『표 2』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공개 현황

연 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공개 여부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	수시 위촉 시
2015	-	○ (2015. 12. 18 - 1명 총원)
2016	×	-
2017	○	○ (2017. 02. 16 - 1명 총원)

■ 연안동 주민센터에서는

☞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의 강화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 및 규정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

(⇒ 행정상 주의)

## 사례 18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소홀 (프로그램, 봉사자, 시설 등)

- 「영종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세칙」 제10조(운영일지의 작성)
  - 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운영일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영종동 주민센터에서는 상기 관련 운영세칙에 따라, 영종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자원봉사자의 활동 내용, 시설장비 유지·관리 현황 등에 대하여 매일 확인하고 해당 사항들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영종동 주민센터는 수감기간(2014. 5 ~ 2017. 2) 현재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를 구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 영종동 주민센터에서는

-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자원봉사자 활동 내용,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을 위해 “영종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세칙”에서 정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를 구비·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리에 만전 (⇒ 행정상 시정)

## 사례 19 수입증지 수납금 납입 지연

-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제6조(수입금의 정산) 제1항 전자증지 수입금의 납입은 구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영종동 주민센터에서는 아래 현황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입증지 수입금 지연 현황”에서와 같이 전자증지 수입금을 1~3일 지체하여 구 금고에 납입한 사실이 있음.

『표』 수입증지 수입금 납입 지연 현황

연번	판 매		납 입	지연일 [일]
	일 자	금 액 (원)	일 자	
1	2015. 2. 17	6,400	2015. 2. 24	2
2	2016. 2. 5	5,000	2016. 2. 11	1
3	2016. 9. 30	65,800	2016. 10. 6	1
4	2016. 12. 18	83,800	2016. 12. 26	3

■ 영종동 주민센터에서는

- ☞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관련내용을 직원들로 하여금 숙지, 수입증지 수입금이 관련조례 지정일(익일) 안에 납입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동인 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행정상 주의)

사례 20 불용품 관리 소홀

- 「인천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 연안동 주민센터에서는 상기 관련 조례에 따라 불용물품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불용결정 및 매각 또는 폐기 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연안동 주민센터에서는

- ☞ 「인천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내용을 직원들로 하여금 숙지토록 하여 사용 물품을 효율적으로 사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 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행정상 주의)

사례 21 민방위 자체 교육훈련 인정대상자 관리 소홀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자체 교육훈련 인정 등)에 근거한 민방위 교육지침 제1항 제1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민방위 자체교육을 서면교육으로 대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연안동 주민센터에서는 2014. 08. 19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되어, 민방위대 편성대상자가 된 권순일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 없이 현재까지 자체교육대상자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연안동 주민센터에서는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된 권순일에 대하여 즉시,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로 편성하여 관리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  
(⇒ 행정상 시정)

**사례 22 차량유지관리 부적정**

- 「인천광역시 중구 관용차량 규칙」 제21조(기록관리)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부터 13호까지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각종대장의 내용을 차량관리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영종동·연안동 주민센터에서는 아래 현황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용차량을 정비한 내역을 효율적인 차량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량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차량관리시스템에 정비내역 입력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표 1』 영종동 주민센터, 차량정비 세부내역 현황

(단위 : 원)

연 번	정 비 일	정비금액	정 비 내 역	비 고
1	2014-05-27	71,500	관용차량 정비	
2	2014-07-22	297,000	관용차량 정비비 지출	
3	2014-11-25	110,000	관용차량수리비 지출	
4	2014-12-16	120,000	관용차량 수리비 지출	
5	2014-12-31	792,000	관용차량 수리비 지출	
6	2015-03-18	22,000	관용차량 정기검사비 지출	
7	2015-05-19	49,500	관용차량(포터86서 2665)정기 검사비 지출	
8	2015-08-19	90,200	관용차량 정비비 지출	
9	2015-12-28	931,700	관용차량 수리비 지출	

『표 2』 연안동 주민센터, 차량정비 세부내역 현황

(단위 : 원)

연 번	정 비 일	정비금액	정 비 내 역	비 고
1	2015-10-16	77,000	관용차량 타이어 교체	
2	2015-12-01	53,000	관용차량 종합검사	
3	2016-11-08	55,000	관용차량 정기검사	

## ▣ 영종동·연안동 주민센터에서는

- ☞ 차량이력카드 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차량수리내역을 각 기관별로 즉시 차량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 주시고, 차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인천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정확히 숙지하여 차량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

(⇒ 행정상 시정)

## 라 복지행정 분야

### 사례 23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 관리 소홀

- “2016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②”(P123~124,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증여·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 차량등록의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시에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의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는 차량소유자인 보호자의 주민등록 변동 사항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주민등록을 변경한 경우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차량을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표지를 회수하여 폐기한다. 라고 되어 있음.

- 연안동 주민센터에서는 수감기간(2015. 9 ~ 2017. 4) 현재까지 발급된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에 있어 “정기적인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차량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 연안동 주민센터에서는

☞ 장애인에게 발급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자동차 소유권 변동, 차량등록의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장애인자동차표지에 대하여는 회수, 폐기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기간”(정기 정비기간)을 정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관리  
(⇒ 행정상 시정)

#### 사례 24 등록장애인 복지카드 회수 소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제2항에 의하면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는 규정,

-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제3항 제1호 등록증 반환 명령을 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음.
- 영종동·연안동 주민센터에서는 아래 현황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9건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미송부하거나 과태료를 미부과한 사실이 있음.

『표 1』 영종동 주민센터, 등록장애인 복지카드 미회수 현황

번호	대 상 자		사망일자	복지카드 회수여부
	성 명	생년월일		
1	김**	1929. **. **	2016. 12. 13	x
2	김**	1928. **. **	2016. 10. 28	x
3	구**	1941. **. **	2015. 07. 22	x
4	이**	1961. **. **	2014. 11. 01	x
5	김**	1936. **. **	2014. 10. 11	x

『표 2』 연안동 주민센터, 등록장애인 복지카드 등 미회수 현황

번호	대 상 자		사망일자	회 수 여 부	
	성 명	생년월일		복지카드	자동차표지
1	한**	1931. **. **	2016. 11. 01	x	미발급
2	방**	1932. **. **	2017. 03. 15	x	미발급
3	정**	1945. **. **	2016. 11. 02	x	○
4	강**	1943. **. **	2016. 07. 27	x	○

▣ 영종동 및 연안동 주민센터에서는

☞ 미회수된 관련 등록증 등이 오남용 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에 따라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적의 조치

(⇒ 행정상 시정)

### Ⅲ

## 행정사항

-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 해당기관(부서) 통보
  - 시정·회수 등 : 1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 감사결과 지적사례 전파로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사전예방